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05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8월 30일 1차상정·검토보고·심사보류】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2차상정·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1.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신설 및 시정의 성주류화 정책 확산 등을 반영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7조제3항)
- 성평등위원회의 “성주류화, 정책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개편하여 “교육·문화, 노동·돌봄,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참조

(2) 입법예고(2019. 3. 21. ~ 4. 10.)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성평등위원회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시정 핵심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의 반영하고 성주류화를 통해 성평등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성평등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7조, 안 제12조)

- 개정안(안 제7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성평등조례」¹⁾)에 따라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 9. 29., 2019. 7. 18.>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3.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6.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²⁾의 당연직 의원을 “기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에서 “시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성평등 담당부서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복지·행정분야(7명)로 한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던 것을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성주류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간, 공공개발, 노동정책 분야(3명 추가)까지 성평등위원회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조례」 제12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개정안(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3개의 분과위원회를 기존의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 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개정안 주문에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제3항 각 호로 규정하려던 것을 제2항의 각 호로 오기한 바, 아래의 제안안을 고려하여 수정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개정안(안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돌봄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 7월 개정된 「성평등조례」²⁾에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평등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이하 “격차개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 7. 18.]

근거를 마련한 바, 중복되는 성별임금격차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규정에 대한 수정(제안)안 : 안 제12조 관련>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안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1항의 분과회의는 <u>성주 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 분석평가 분과위원회</u>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2.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u> <u><신설></u></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u> ----- ----- -----</p> <p>1. <u>교육·문화 분과위원회: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개정안과 같음)</u></p> <p>1. <u>(현행과 같음)</u></p> <p>2. <u>(현행과 같음)</u></p> <p><u><삭제></u> <u>(현행과 같음)</u></p>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안
<p>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성주류화 분과위원회</u> : <u>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정책개발 분과위원회</u> : <u>보육,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3. <u>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u> : <u>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u></p>	<p>③ ----- ----- -----</p> <p>1. <u>(현행과 같음)</u></p> <p>2. <u>(현행과 같음)</u></p> <p>3. <u>(현행과 같음)</u></p>	<p>③ (현행과 같음)</p> <p>1. <u>교육·문화 분과위원회</u>: <u>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2. <u>노동·돌봄 분과위원회</u> : <u>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u> : <u>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 분과위원회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성평등조례」제12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가 2019년 7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별도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바, 나머지 2개 분과위원회를 분과 간 성격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시정의 핵심분야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구 분		운 영 내 용	여성가족정책실 소관팀
전체위원회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여성정책기획팀
기획조정위원회 (시정전반)		▶ 분과별 논의할 의제 발굴 제안 ▶ 행정 제안안건 자문 및 보완의견 제시	
분 과 위 원 회	폭력예방/안전	젠더 폭력예방 및 대응, 안심특별시 정책 자문	여성안심사업팀
	노동/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틈새없는 돌봄정책 자문	성평등노동팀
	성평등 교육/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젠더정책팀

출처 : 2019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408, 2019.1.24.)

□ 젠더자문관 업무범위 조정(안 제13조)

- 개정안(안 제13조제2항)은 「성평등조례」 제13조제1항³⁾에 따라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등의 실무 업무 보다는 전문가로서 업무 특성을 인정하여 자문의 역할을 강화하고(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시정 주요사업의 부시장 이상 결재 건에 협조 결재 및 협조결재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같은 항 제2호)를 하도록 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시정 전반에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을 둔다.

3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성평등위원회의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시정 핵심 분야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성평등정책을 전담하는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를 조정·강화하여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의 반영하고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한 서울을 조성하고 하려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성평등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잘못된 조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오기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삭제하는 일부조항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례 개정 이전에 절차를 무시하고 시장방침(“2019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여성정책담당관-1408, 2019.1.24.)을 통해 성평등위원회 확대 및 분과위원회 재구성, 젠더자문관의 업무조정 등을 기추진한 점에 대한 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참고자료 1〉

2019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및 분과구성, 회의운영 등을 개선·시행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강화 및 효율적인 성주류화 추진

운영근거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

운영방향

- 시정 핵심분야와 위원회의 분과를 일치시킴으로써 의제중심의 집중적인 논의와 정책개발 기능 강화
- 「기획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에 분과별 의제선정 및 숙의 진행으로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운영
- 도시공간, 공공개발분야 등 실·본부 내부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균형감있는 성인지 관점 반영

위원회 개요

- 인 원 : 총 40명
- 공동위원장 : 시장, 정진성(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부위원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 : 성평등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임원 및 공무원 등
 - 당연직 : 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등(10명)
 - 위촉직 : 시의원, 여성가족·복지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임직원 등(30명)
 - ※ 임기 2년 (4기 임기 '18.12.1.~ '20.11.30,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회의운영 : 연 13회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
- 주요기능 :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정
 -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주류화 관련 사항
- 여성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19년 운영계획

○ 주요 개선사항

① **분과변경** : **시정 핵심분야와 위원회 분과 일치로 분과별 역할 중첩을 방지**
하고 의제중심 집중논의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

- (당초) 성주류화분과, 정책개발분과, 성별영향평가분과
- (변경) 폭력예방/안전분과, 노동/돌봄분과, 성평등교육/문화분과
 ⇒ 첫회 분과 회의에서 '분과명'과 '기능'에 대한 논의 후 확정예정

※ 성별영향평가분과 :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정예정('19년)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별도 운영

② **기획조정위원회 신설** : **사전에 분과별 의제선정 및 숙의진행으로 분과**
위원회 효율적 운영 지원

- (구성) 전체회의 위원장, 분과위원장, 젠더특보, 행정집행부서 등
- (운영) 분과별 회의 전 개최(연 2회)

③ **당연직 행정위원 확대** : **행정2부시장 소관 및 노동분야 내부위원 추가(3명)**

- (기존) 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기획·복지·행정분야 실·본부장 7명
- (변경) 도시공간, 공공개발, 노동정책 분야 실·국장 확대(3명)

○ 위원회별 역할강화

구 분	운 영 내 용	소 관 팀	
전체위원회	▶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조정	여성정책기획팀	
기획조정위원회 (시정전반)	▶ 분과별 논의할 의제 발굴 제안 ▶ 행정 제안안건 자문 및 보완의견 제시		
분과위원회	폭력예방/안전	젠더 폭력예방 및 대응, 안심특별시 정책 자문	여성안심사업팀
	노동/돌봄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틈새없는 돌봄정책 자문	성평등노동팀
	성평등 교육/문화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젠더정책팀

회의 운영계획

○ 연 13회 예정

구 분		횟수	개최 예정일(안)
전 체 회 의		2회	3.14(목), 12.26(목)
기획조정위원회		2회	2.28(목), 9.17(화)
분 과 위원회	폭력예방/안전	3회	2.19(화)(오전), 5.28(화)(오전), 10.24(목)(오전)
	노동/돌봄	3회	2.18(월)(오전), 5.30(목)(오전), 10.29(화)(오전)
	성평등교육/문화	3회	2.18(월)(오후), 5.31(금)(오전), 10.25(금)(오전)

○ 주요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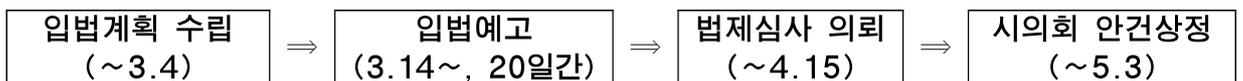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공통 안건		2019년 여성가족정책 주요업무 보고,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보고 및 개선계획, 기타 여성가족실에서 다루지 않으나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정책 등
개별 안건	폭력예방 /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모델 구축, 여성안심망 강화,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촬영 근절 정책 등
	노동/돌봄	▶ 성별임금격차(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성평등노동 행정체계 구축 등 ▶ 틈새없는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등
	성평등 교육/문화	다양한 세대 및 직군을 위한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확산 정책 등

소요예산 : 37,800천원

- 회의수당 및 진행경비 지출 등
- 예산과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추진 : 분과조정, 위원수 변경 등



- 도시공간·공공개발 분야 내부위원 선정 : '19. 2월
- 분과별 회의진행 : '19. 2월 ~

붙임 성평등위원회 명단.끝.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분야)	성 명	직 위
1	공동위원장	박 원 순	서울특별시장
2	공동위원장	정 진 성	서울대 명예교수
3	부위원장	문 미 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내 부 위 원	강 태 응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5	내 부 위 원	조 인 동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6	내 부 위 원	황 치 영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7	내 부 위 원	황 인 식	서울특별시 행정국장
8	내 부 위 원	강 병 호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9	내 부 위 원	김 태 형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10	내 부 위 원	공 석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11	시의원	김 동 식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2	시의원	김 용 연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3	젠더폭력/안전(과학·경제)	백 은 옥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14	젠더폭력/안전(법률)	조 숙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15	젠더폭력/안전(법률)	신 윤 경	법률사무소 단심 변호사
16	젠더폭력/안전(복지행정)	배 복 주	장애여성공감대표
17	젠더폭력/안전(시민사회)	고 미 경	한국여성성의전화 상임대표
18	젠더폭력/안전(시민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19	젠더폭력/안전(시민사회)	박 혜 경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20	젠더폭력/안전(시민사회)	백 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1	젠더폭력/안전(여성가족)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2	젠더폭력/안전(여성가족)	차 해 영	청년정책네트워크
23	노동/돌봄(과학·경제)	주 진 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4	노동/돌봄(복지행정)	송 다 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5	노동/돌봄(복지행정)	최 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6	노동/돌봄(시민사회)	조 종 남	서울YWCA회장
27	노동/돌봄(시민사회)	손 영 주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표
28	노동/돌봄(여성가족)	신 경 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9	노동/돌봄(여성가족)	박 귀 천	이화여대 인권센터장
30	성평등교육/문화(여성가족)	강 경 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1	성평등교육/문화(과학·경제)	이 상 경	현대리서치 대표
32	성평등교육/문화(시민사회)	김 양 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33	성평등교육/문화(시민사회)	이 한	청년정책네트워크 성평등분과 위원
34	성평등교육/문화(언론문화)	이 은 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
35	성평등교육/문화(언론문화)	배 상 복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부국장
36	성평등교육/문화(언론문화)	정 은 령	서울대학교언론정보연구소
37	성평등교육/문화(여성가족)	배 은 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38	성평등교육/문화(여성가족)	김 은 희	여성 명예시장
39	성평등교육/문화(여성가족)	포포바 예카테리나	외국인 명예시장
40	성평등교육/문화(여성가족)	정 영 훈	한국여성연구소장

〈참고자료 2〉

젠더자문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19.8월 현재)

조례상 업무범위	업무	내 용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3.8 성평등서울 추진계획 수립 자문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문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자문
	젠더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정책발굴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젠더거버넌스 민관협의체 회의 (5회)
		젠더거버넌스 도시재생 분야 간담회 (2회)
		성인지 관점의 도시재생 정책포럼 (2회)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 에서의 자문 및 협의	협조결재	사업계획서 젠더관점 검토 및 자문 (26건) ※ 사후검토 25건 별도 실시
		협조결재 의무 대상부서 확대
	정책자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젠더 기반 구축 자문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웹사이트 구축 완료 보고회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및 표지판 디자인 가이드 라인 자문
	주요회의 참석	정례 간부회의 등 주요회의 참석 (12회)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성인지예산 내실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개발 등 회의 참석 및 자문 (3회)
		성인지 예산 교육 모니터링 (2회)
	주요사업 추진평가 및 환류	[돈의문박물관], [더아리움], [서울 생활사 박물관] 등 전시물 모니터링 및 성평등 운영 자문
		협조결재 젠더관점 자문 추진 현황 모니터링
주요사업 추진부서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	4대폭력 예방교육	4대폭력예방교육 자문 및 모니터링 (4회)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 참석 (2회)
	성인지 강화 교육	성인지 강화 교육 자문 및 모니터링 (4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 오기로 인해 잘못된 조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2항에서 같은조제3항으로 옮기고,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중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함.

2. 수정안 주요 내용

- 각 호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11명,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05
----------	-----------

제안년월일 : 2019년 8월 30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오기로 인해 잘못된 조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2항에서 같은조제3항으로 옮기고,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중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각 호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제안)안
<p>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u>공무원 7명</u>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u>풍부한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u> ----- ----- ----- ----- <u>풍부한 사람</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개정안과 같음)</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1항의 분과회의는 <u>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u>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u></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에 방·안전 분과위원회</u> ----- ----- ----- -----.</p> <p>1. <u>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u></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u>② (개정안과 같음)</u></p> <p>1.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안
<p>위원장을 제외한 위 촉직 위원으로 구성 한다.</p> <p>2. <u>분과위원회의 위 원장(이하 "분과위원 장"이라 한다)은 분 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 회 위원(이하 "분과 위원"이라 한다) 중 에서 호선한다.</u> <u><신 설></u></p> <p>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p> <p>1. <u>성주류화 분과위 원회 :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 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2. <u>정책개발 분과위 원회 : 보육, 일자리,</u></p>	<p><u>육, 성평등 문화 확 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2. <u>노동·돌봄 분과 위원회 : 성별임금격 차 해소 등 성평등 노동 정책, 틈새 없 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p> <p>3. <u>젠더폭력예방·안 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 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③ ----- ----- ----- -----</p> <p>1. <u>(현행과 같음)</u></p> <p>2. <u>(현행과 같음)</u></p>	<p>2. <u>(현행과 같음)</u></p> <p><u><삭 제></u> <u>(현행과 같음)</u></p> <p>③ (현행과 같음)</p> <p>1. <u>교육·문화 분과 위원회: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2. <u>노동·돌봄 분과 위원회 : 노동환경 개</u></p>

현행	개정안	수정(제안)안
<p><u>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3. <u>성별영향분석평가</u> <u>분과위원회</u> : <u>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u></p> <p>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생략)</p> <p>② <u>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u></p> <p>2. <u>주요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u></p> <p>3. <u>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u></p> <p>4. ~ 5. (생략)</p>	<p>3. <u>(현행과 같음)</u></p> <p>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u>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u></p> <p>2. -----</p> <p>-----</p> <p>--<u>협의(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u></p> <p>3. -----</p> <p>3. <u>평가 및 환류</u></p> <p>4. ~ 5. (현행과 같음)</p>	<p><u>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3. <u>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u> : <u>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u> <u>에 관한 사항</u></p> <p>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u>(개정안과 같음)</u></p> <p>2. <u>(개정안과 같음)</u></p> <p>3. <u>(개정안과 같음)</u></p> <p>4. ~ 5.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정(제안)안
<p>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u>같은 법 제53조의2</u>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 ----- ----- ----「<u>지방회계법</u>」 제18 <u>조</u>----- ----- ----- ----- -----.</p>	<p>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u>개정안과 같음</u>)</p>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공무원 7명”을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으로 하고,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를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돌봄 분과위원회 : 노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를 “협의(시

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을 “평가 및 환류”로 한다.

1.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제36조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 · 경제 ·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u>공무원 7명</u>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u>풍부한 자</u>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생략)</p> <p>② 1항의 분과회의는 <u>성주류화 분과위원회,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u>로 하고,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u>성주류화 분과위원회</u> : 성인 지예산,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u>정책개발 분과위원회</u> : 보육,</p>	<p>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10명</u> ----- ----- ----- <u>풍부한 사람</u> ----- -----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교육 · 문화 분과위원회, 노동 · 돌봄 분과위원회, 젠더폭력예방 · 안전 분과위원회</u> ----- ----- ----- 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1. <u>교육 · 문화 분과위원회</u> : 성평등 교육,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u>노동 · 돌봄 분과위원회</u> : 노</p>

일자리, 안전,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 조례의 제·개정, 정책,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평등 정책 발굴

2.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협의

3. 주요사업 추진실적 평가, 환류 및 보고서 작성

4. ~ 5. (생략)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동환경 개선정책,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젠더폭력예방·안전 분과위원회 :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젠더자문관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

2. -----
-----협의(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

3. -----평가 및 환류

4. ~ 5. (현행과 같음)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

「지방회계법」 제18조-----

